

서울고등법원 2023. 5.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3. 5. 24 선고 2022나2029981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28 선고 2021가합541467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호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율촌

담당변호사 신기선, 곽태훈, 이상준, 조윤희

변론종결 2023. 3. 22.

판결선고 2023. 5. 24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28. 선고 2021가합541467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0. 6. 24. 자 60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60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소 중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.

[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]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“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F은”을 “피고는”으로 고쳐 쓰고, 제3면의 각주 1을 삭제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“F은” 앞에 “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”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.

『5) 위 9,000,000원권 수표 총 40장은 2020. 7. 22.부터 2020. 9. 29.까지 E은행 선릉지점 또는 R지점에서 배서 없이 또는 F 등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을 각 배서자로 하여 현금으로 인출되었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“기재” 다음에 “,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”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의 “피고는 …… 없다.”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피고는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, 그 직후 C에게 이를 전액

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“231,127,300원”을 “231,126,700원”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”F은“을 ”피고는“으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”2020. 8. 31.“ 앞에 ”F은“을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5면 제16, 17행의 ”피고 명의 E은행계좌에서 위 600,000,000 원을 출금하여 출금한 해당 수표를 이용하여“를 ”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600,000,000원의 일부로“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의 ”2) 나머지 368,873,300원 부분“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

『앞서 든 증거들, 을 제3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C이 피고에게 위 60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거나, ② 그중 C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에 사용된 231,126,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8,873,300원이 C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가) 이 사건 송금행위가 이루어진 2020. 6. 24. 당시 C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반면, 피고는 2019년 종합소득세(지방세 포함)로 169,858,100원을 납부하고, 서울 중구 S 소재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력이 있어 C이 피고에게 600,000,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위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. 뿐만 아니라, 피고는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C으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투자의 경위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.

나) 위 600,000,000원은 300,000,000원권 수표 2장으로 인출되었고, 위 수표들 중에서 C의 세금 납부에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9,000,000원권 수표들로 재발행되었으며, 이와 같이 재발행된 수표들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순차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. 위 수표들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현금화된 이유나 경위, 현금화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

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, 피고와 C이 부부 사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,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위 수표들에 배서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수표금이 C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.

다)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, C의 은행 업무 관련 심부름을 대부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, 위 돈에 대해서는 C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입금하였는지,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.』

○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”해당한다“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.

『(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다고도 주장하나,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로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).』

2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31,126,700원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,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8,873,300원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엄상필, 판사 주선아, 판사 김광남